

4단계 두뇌한국(BK)21 「수리과학 인재양성 교육연구단」 사업 운영 세부 지침

제정 2021. 04. 12., BK21 규칙 제1호

개정 2022. 02. 10., BK21 규칙 제00호

개정 2022. 06. 30., BK21 규칙 제00호

개정 2022. 11. 30., BK21 규칙 제00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교육부훈령 제353호 『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관리 운영에 관한 훈령(2020. 11. 27 시행)』에 의거 추진하는 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이하 “BK21 사업”이라 한다)에 참여하는 부산대학교「수리과학 인재양성 교육연구단(이하 ‘수학과 교육연구단’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업) 수학과 교육연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통합 비전) 교육/연구 혁신을 통한 글로벌 선도 수리과학 연구중심대학원 건설

(통합 목표) 수리과학 분야 세계 100위권 수준의 연구중심대학원 진입

2. 교육역량 부문

(비전) 수리과학 분야 세계 100위권 수준의 교육역량 중심대학원, 고도의 수학지식과 사고능력을 겸비한 수학분야 고급연구 인력을 양성하는 중핵대학원, 수리과학 분야 새로운 아이디어 창출 및 원천기술 확보를 통한 국가 창의 경제 경쟁력 증대에 기여할 미래혁신대학원, 국제적 인지도를 높이고 국제 균형 감각을 이루어내는 수리과학대학원

(목표) 학문적, 국가적으로 인류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수리과학 역할 창출 및 미래기반 인재양성, 대학 및 연구소 등 교육기관에 기여할 창의적 석박사급 고급 인재양성, 신 개념의 아이디어에 기반한 수리과학과 기초과학 지식을 산업과 경제에 접목시켜 사회발전을 이루는 혁신 창의 융합 인재양성, 기초과학과 산업기술을 접목시키는 수학의 고유한 역할 및 독자적 위상 정립과 이를 위한 학문후속세대 양성, 지역 거점 국립대학으로서 산업계, 학계 및 사회계 등에 전문가급 인적자원 공급 역할 담당

3. 연구역량 부문

(비전) 수리과학 분야 세계 100위권 수준의 연구역량 중심대학원, 수리과학 수월성 및 이론중심 연구 능력 강화, 지역거점 연구중심대학원으로 지역사회의 발전 혁신 선도

(목표) 참여교수 1인당 연구비 수주의 목표치 순차적 상향, 주요 연구지표의 연차별 양적 성장 및 질적 우수성 강화

제3조 (교육연구단의 구성) ① 수학과 교육연구단은 BK21사업 참여요건과 자격을 갖춘 부산대학

교(이하 ‘본교’ 라 한다) 수학과 소속 전임교원으로 구성한다.

② 교육연구단의 참여교수를 교체하거나 그 수를 늘릴 경우, 교육연구단장은 해당교수의 자격요건을 검증하여야 하며, 변경사유와 해당교수의 연구실적을 첨부하여 본교 산학협력단장을 경유하여 한국연구재단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교육연구단은 제2조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신진연구인력, 산학협력전담인력, 해외학자, 사무직원 등을 둘 수 있다.

제4조 (조직) ① 교육연구단장은 당초 교육부의 BK21사업 공모에 교육연구단으로 선정되어 협약서를 체결한 전임교원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교육연구단장을 교체하고자 할 경우에는 교육부의 『BK21사업 교육연구단장 변경처리 기준』을 따른다.

② 교육연구단에 필요에 따라 부단장을 둘 수 있으며, 참여교수 중에서 단장이 선임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교육연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와 자문위원회를 둔다.

④ 교육연구단의 성과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자체평가위원회를 둔다.

⑤ 교육연구단은 분야별 『교육, 연구, 국제화, 지역사회』 성과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교육과정개발위원회, 학생지원위원회, 인프라구축위원회 등 필요에 따라서 각종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제5조 (교육연구단장의 책무) ① 교육연구단장은 교육연구단을 대표하며,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무를 갖는다.

1. 사업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

2. 사업의 총괄 수행

3. 사업결과 및 사업비 사용 실적의 보고

4. 사업실적, 성과의 홍보 및 확산

5. 기타 교육연구단 운영과 관련하여 교육부장관,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및 총장이 정하는 사항

② 교육연구단장은 사업기간 동안 사업공고 또는 협약체결 시 정한 사업 참여 조건을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장관이 그 기준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된 조건을 따라야 한다.

③ 교육연구단장은 관계법령을 준수하며 해당 사업의 목적 및 성과달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교육연구단장은 교육연구단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과 자체 성과평가 기준 등에 대하여 참여교수들에게 공개하고, 교육연구단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제6조 (운영위원회) ① 운영위원회는 교육연구단의 참여교수 중 5명 내외로 인원을 선정하여 구성하고, 위원장은 교육연구단장이 된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육연구단(팀)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참여교수의 참여 요건 및 지원대학원생 배정에 관한 사항
3. 신진연구인력, 산학협력전담인력 및 해외학자의 선발에 관한 사항
4. 참여대학원생, 지원대학원생 선발기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참여교수의 성과급 지급 기준 등에 관한 사항
6. 교육연구단(팀)의 운영 지침 제정 및 개정
7. 연차별 사업계획 수립 및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8. 기타 교육연구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학과장, 센터장, 연구소장 등은 당연직으로, 교육연구단 분야별 담당 교수 중에서 운영위원회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④ 운영위원회는 최소한 학기별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제7조 (참여교수의 신규 선정 및 교체) 교육연구단에 참여하는 신규 선정 및 교체 등의 기준은 다음 각 항과 그에 따른 각 호와 같다.

① 참여교수의 연구실적 및 교육연구단 기여도에 따른 평가항목을 정량화, 객관화하여 그 결과를 교육연구단 참여교수의 신규 선발 및 교체 등의 근거로 삼는다.

② 교육연구단에 참여하는 교수의 자격은 고등교육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임교원으로 하며, 필요시 협동과정 겸임교수도 교육연구단 참여교수가 될 수 있다.

③ 참여교수의 소속은 부산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수학과로 한정한다.

④ 교육연구단에 참여하는 교수의 평가대상 기간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평가는 상기 ①(목적)에 근거하여 교육연구단 운영에 필요시 실시하며, 평가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2. 4단계 BK21 사업 평가는 평가 시점 기준 최근 1년간 자료를 근거로 평가한다.

⑤ 교육연구단에 참여하는 교수의 평가는 [별표5]의 (첨부1) ‘4단계 BK21 사업 참여교수 자체평가표’의 평가 방법 및 기준을 따른다.

⑥ 참여교수의 선발은 필요시 다음 각 호에 의거하여 선발한다.

1. 교육연구단 참여교수 수는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위원회가 결정한다.
2. 교육연구단에서 참여교수를 교체하거나 그 수를 늘리는 것은 가능하나, 사업 신청 시를 기준으로 참여교수의 총 수를 줄일 수는 없다.
3. 교육연구단 참여교수 선발은 정해진 자격요건 및 평가기준에 의한 평가결과를 토대로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고 참여교수 전체회의에서 선발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4. 그 외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⑦ 참여교수의 교체는 아래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참여교수가 있을 경우 운영위원

회는 참여교수 교체를 발의할 수 있으며 참여교수 전체회의에서 교체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1. 중대한 건강 이상 및 사망
2. 연구실적 및 사업 참여 실적 저조
3. 연구년 또는 12개월 이상의 장기 해외출장으로 사업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4. 기타 정상적인 교육 및 연구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제8조 (참여대학원생 자격 및 선발기준) ① 교육연구단에 참여하는 대학원생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연구단에 참여하는 교수(참여교수)가 지도하는 학생 중 전일제 대학원생을 말한다.
 2. 입학한 지 4년이 지나지 않은 석사과정생 및 석사 수료생, 입학한 지 4년이 지나지 않은 박사과정생 및 박사 수료생, 입학한 지 6년이 지나지 않은 석·박사통합과정생 및 석·박사통합과정수료생에 해당하여야 한다.
 3. 주 40시간 이상 교육과 연구에 전념하여야 하며, 교육연구단장이 요구할 경우 각종 실적 또는 지원 내역 등의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지닌다.
- ② 교육연구단에 지원하는 대학원생의 신규 선발은 상기 ①항의 자격을 가진 대학원생으로 지도교수 또는 학과장의 추천을 받아 운영위원회에서 최종 선발한다.
- ③ 지원대학원생이란 교육연구단 참여대학원생 중에서 대학원생 연구장학금을 받는 대학원생을 의미하며, 교육연구단에서 제시한 평가를 거쳐 선발하되 선발원칙 및 지원 금액은 [별표 1]과 같다.

제9조 (신진연구인력 선발기준 및 활용 계획) ① 교육연구단에 참여하는 신진연구인력인 계약교수와 박사후 연수연구원의 선발기준과 관리는 부산대학교와 수학과와 임용규정 및 기준을 준용하여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약교수는 [별표 2]의 규정을 따른다.
 2. 박사후 연수연구원은 [별표 3]의 규정을 따른다.
- ② 교육연구단에 참여하는 신진연구인력의 T/O 발생시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약교수 T/O 발생 3개월 전에 계약교수의 후보자 pool에서 연구실적이 가장 우수한 후보를 선발하여 지원한다. 만약, 교육연구단의 운영상 필요하면 T/O는 박사후 연수연구원으로 충당한다.
 2. 박사후 연수연구원 T/O 발생 1개월 전에 박사후 연수연구원 후보자 pool에서 연구실적이 가장 우수한 후보를 선발하여 지원한다. 만약, 교육연구단의 운영상 필요하면 T/O는 계약교수로 충당한다.
- ③ 교육연구단에 참여하는 신진연구인력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1. 신진연구인력이라함은 박사학위를 가진 계약교수, 박사후 연수연구원을 의미한다.
 2. 계약교수는 제1저자 혹은 교신저자로서 계약기간 동안 연평균 JCR 카타고리별 IF 상

- 위 20% 이내의 논문 1건 이상을 SCIE(SSCI) 학술지에 게재(혹은 게재확정)하여야 한다.
3. 박사후 연수연구원은 계약기간 동안 연평균 JCR 카타고리별 IF 상위 30% 이내의 논문 1건 이상을 SCIE(SSCI) 학술지에 게재(혹은 게재확정)하여야 한다.
 4. 교육연구단에서 실시하는 대학원 세미나 및 국제학술회의 주관을 수행하여야 한다.
 5. 대학원생 대상으로 본인의 연구주제에 대한 집중강연을 1번 이상 수행하여야 한다.
 6. 대학원 전공일치 학생을 대상으로 스터디그룹 지도에 요청 시 참여하여야 한다.
 7. 계약교수는 교육연구단 참여교수의 학부 또는 대학원 강의 지원 요청 시 참여하여야 한다.
 8. 박사후 연수연구원은 임용시 요청된 추천 지도교수와의 공동연구를 의무화해야 한다.

제10조(해외학자) 교육연구단에 해외학자를 초빙 할 경우, 선발기준과 활용계획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교육연구단의 장 및 대학의 장은 교육연구단의 목적 달성 등을 위하여 해외학자를 초빙하거나 활용할 수 있다.
- ② 해외학자는 해외 소재 대학, 연구소, 기업체 소속의 교수 또는 연구원이어야 한다.
- ③ 해외학자가 사업기간 중 국내 대학으로 이직하거나 전임으로 임용되는 경우 임용시점 이후에는 해외학자 초빙 대상에 포함할 수 없으며 해외학자 초빙 관련 지원 경비를 집행할 수 없다.

제11조 (산학협력전담인력) 교육연구단에 두는 산학협력전담인력의 선발기준과 활용계획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현재 해당사항 없음.

제12조 (참여인력의 채용계약) 교육연구단에 참여하는 신진연구인력, 산학협력전담인력 및 사무직원의 채용은 교육연구단에서 계약대상자를 선발하고 자격을 검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산학협력단장에게 채용계약을 요청하여야 한다.[별표 2], [별표 3], [별표 4],

제13조 (성과급) ① 효율적인 사업추진과 성과 달성을 위하여 참여교수에게 연구 성과 및 교육연구단 운영 기여도 등에 따라 교육연구단 운영비에서 [별표 5] 기준의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 ② 신진연구인력 인건비 및 대학원생 연구장학금 항목에서 [별표 5]의 기준에 따라 신진연구인력 및 참여 대학원생에 대한 성과급을 지급 할 수 있다.
- ③ 성과급은 정기적, 고정급 지급 등 급여 성격으로 지급할 수 없다.

제14조 (인건비 등의 지급방법) ① 대학원생 연구장학금 및 신진연구인력, 산학협력전담인

력, 해외학자, 교육연구단 행정직원의 인건비는 매월 20일에 지급 대상자의 개인별 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급일이 주말 또는 공휴일 경우에는 주말 또는 공휴일의 전일에 지급한다.

②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사업비 배정 지연 등의 사유로 지급일 현재 사업비 배정잔액이 지급예정액보다 부족할 경우에는 사업비 추가배정 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국제협력지원기준) 교육연구단의 예산으로 지원하는 국제학술회의 발표 및 장·단기 해외연수대상 대학원생의 선발 및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참여대학원생의 국제협력지원은 [별표 1], [별표 6]의 규정과 실적평가에 의해 선정한다.
2. 국외석학 초빙 집중강연, 세미나, 초청강연 및 Workshop 개최 (신청서 및 세부시행지침 ☞ [별표 6] 2)국외초청학자)
3. 국제학술회의 개최 경비 보조 (신청서 및 세부시행지침 ☞ [별표 6] 3)국제학술회의 개최)

제16조 (자체평가위원회) ① 교육연구단에 상설 운영하는 자체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상설 운영한다.

② 평가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은 운영위원회 위원이 아닌 교육연구단 참여교수로 한다.
2. 내부위원은 운영위원회 위원이 아닌 교육연구단 참여교수로 한다.
3. 외부위원은 외부인사 1명으로 한다.

③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교육연구단의 연차, 중간, 종합평가계획 수립 및 실시
2. 교육 분야와 업적에 관한 평가시행, 실행예산, 각종 운영규정, 시설 등의 점검 및 사업 계획 점검

④ 교육연구단장은 한국연구재단에서 연차평가, 중간평가, 종합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본교 4단계 BK21 사업 운영성과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 (회의) ① 운영위원회 및 평가위원회 회의는 각 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 (홈페이지 운영) 교육연구단은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교육연구단 현황, 사업 참여자, 사업계획서, 사업진행 상황, 사업 실적 및 성과, 참여대학원생에 대한 지원 내역 등을 게재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9조 (재정) 교육연구단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은 교육연구단에 배정되는 BK21사업비와 기타 학과 자체 예산 등으로 충당한다.

제20조 (세부사항) 교육연구단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교육연구단장이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지침은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장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이전에 교육연구단에서 이미 집행한 4단계 BK21 사업은 이 지침에 의하여 추진한 것으로 본다.

[별표 1]

대학원생 지원과 장학생 선발 및 업무에 관한 규정

Regulation for Graduate Students Support and Selecting Scholarship Students and Duty

제정 2021. 04. 12., 4단계 BK21 규칙 제00호

개정 2022. 02. 10., 4단계 BK21 규칙 제00호

개정 2022. 06. 30., 4단계 BK21 규칙 제00호

개정 2022. 11. 30., 4단계 BK21 규칙 제00호

1. 대상 (BK21FOUR eligible candidates)

- (1) BK21FOUR 참여대학원생은 수학과 대학원 전일제 대학원생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A BK21FOUR graduate student shall be a full-time graduate student of the Department of Mathematics who satisfies under any of the following)
- ① 입학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석사과정생 및 석사 수료생 (Master students who have entered the school for less than two years)
 - ② 입학한 지 4년이 지나지 않은 박사과정생 및 박사 수료생 (Ph.D. graduates who have entered the school for less than four years)
 - ③ 입학한 지 6년이 지나지 않은 석·박사통합과정생 및 석·박사통합과정수료생 (Master/Doctor integration course students who have entered the school for less than six years)
- (2) BK21FOUR 장학금 지원대상은 참여대학원생으로 교육연구단에서 정한 장학생 선정원칙(아래)을 충족하는 학생에 한한다. (Support from BK21FOUR is only for who satisfies the rules given below which are determined by the office.)

2. 종류 및 조건 (Kinds of Support and Required Documents)

- (1) 교육연구단 참여대학원생에게 BK21FOUR 장학금, 장·단기 해외연수비, 학술회의 논문 발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BK21FOUR support students for short and long term foreign training cost and expense for a presentation in some academic conference, etc.)
- (2) 실적평가에 따라 실적평가 우수자에게 별도의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Students can have extra incentives who excel in performance evaluation according to performance evaluation.)
- (3) BK21FOUR 교육연구단 참여를 희망하는 대학원생은 해당학기 마지막 달에 해당학기 [붙임 1] 부산대학교 수학과 대학원생 학기별 연구활동보고서(이하 연구활동보고서)를 교육연구단 행정실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은 학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석사 신입생은 장학생선발시험에 응시해야 하며, 박사과정 신입생 등 처음 진입하는 대학원생은 해당학기 연구활동보고서를 필히 제출해야하며, 지원 대상 여부는 교육연구단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4) 지도교수는 연구활동보고서에 대하여 지도 학생과 상담을 실시하여야 하며, 차학기 장학생 추천 여부를 행정실에 고지하여야 한다. 연구활동보고서와 지도교수의 추천을 고려하여 지원대학원생 최종 선정은 교육연구단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3. 장학생 선정원칙 (Selection Criteria)

- (1)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 배출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우수대학원생에 한하여 선별적으로 선정한다. (Selectively chosen among outstanding graduate students who are evaluated to be able to complete an academic degree for a master or a doctor.)
- (2) 국내외 우수대학원생 유치와 석·박사 과정 중 교육과 연구의 최적화를 위해 선별적으로 선정한다. (Selectively chosen to attract domestic and foreign outstanding graduate students and to optimize education and research during the masters and doctorate courses.)
- (3) 교육연구단 참여대학원생 중 장학생의 비율은 석사 및 박사과정 70%를 초과 할 수 없다. (Maximum 70% of

total participants in BK21FOUR of masters and doctors can have scholarship.)

- (4) 해당 학기 2월(8월) 중순~하순에 제출된 해당학기 연구활동보고서와 지도교수의 추천을 고려하여 전기(후기)장학생을 2월(8월) 하순 개최 운영위원회에서 선발한다.
- (5) **(신입생 선발원칙, Rules for Selecting Freshmen)** 석사/박사 신입생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로 선정한다. (New students are selected according to the following rules.)
- ① 석사과정 신입생의 장학생 선발 및 기타 지원여부는 운영위원회에서 장학생선발시험 결과 및 면담을 통하여 선정한다. (For a freshmen on masters course, selection of a scholarship student and whether to get supports from other business or not is determined by the steering committee according to the scholarship student selection test and a face-to-face talk.)
 - ② 박사과정 신입생의 장학생 선발은 심사학기 대학원생 연구활동보고서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선발한다. 단, 심사학기 대학원생 연구활동보고서가 없는 경우에는 석사성적, 석사학위 논문, 지도교수 추천을 고려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선발한다.
- (6) **석사/박사과정 재학생/박사과정 수료후연구생 선발원칙** 석사/박사과정 재학생/박사과정 수료후 연구생 선발은 다음 각 호로 선정한다.
- ① 연구활동보고서는 5개 영역[Ⅰ. BK 참여활동, Ⅱ. 정규수업 성적, Ⅲ. 개인연구활동, Ⅳ. 총평 및 계획, Ⅴ. 지도교수확인, Ⅵ. 장학생 근로]으로 구성한다.
 - ② [Ⅰ. BK 참여활동] 영역은 사업단에서 작성·평가하며, 평가등급은 총 5개의 등급(A~E)으로 구분하고, 각 등급은 평가 대상 대학원생들의 20% 내외로 구성한다.
 - ③ [Ⅱ. 정규수업 성적], [Ⅲ. 개인연구활동], [Ⅳ. 총평 및 계획] 영역은 대학원생 개인이 작성하며, 지도교수는 지도학생의 연구활동보고서에 대하여 지도학생과의 상담을 실시하여야 한다. 지도교수는 [Ⅰ~Ⅴ] 영역에 대한 지도학생의 평가등급(A~E)을 산출하고, 차학기 장학생 추천 여부를 결정하여 행정실에 고지하여야 한다.
 - ④ [Ⅵ. 장학생 근로] 영역은 대학원생 개인이 작성하며, 관리자(업무에 따라 TA 과목교수 혹은 사업단)가 평가등급(A~E)을 산출하여 행정실에 고지하여야 한다.
 - ⑤ 최종평가 등급은 사업단 평가 영역에서 1/3, 지도교수 평가 영역에서 1/3, 관리자 평가 영역에서 1/3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하며, **연구활동보고서**와 지도교수의 추천을 고려하여 지원대학원생 최종 선정은 교육연구단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⑥ 교육연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특별한 목적의 장학생 선발이 필요하면 제한된 범위에서 운영위원회에서 별도로 선정할 수 있다. (In some special cases, the steering committee can select a special purpose scholarship student for a smooth management of agency, if needed.)

4. 장학금 지급 내규 (Regulations for Scholarship Payment)

- (1) 장학금 지원은 참여대학원생의 교육연구단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차등 지급할 수 있다. (Support for scholarship can be paid in different rate within the range of the budget according to an attribution of a participating graduate student for agency.)
- (2) 차등 지급 원칙과 기준은 매학기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며, 교육연구단 참여교수 1/2이상의 동의를 거쳐 확정한다. (The principle and the standard of a graded payment is determined by the steering committee every semester, and is confirmed when more than 50% professors of agency are agreed.)

5. 장학생 선정 취소 (Cancellation of Scholarship)

- (1) 전일제 학생 신분이 변경되면 즉시 선정이 취소된다. (The scholarship will be cancelled immediately if there is a change on full-time student status.)
- (2) 지도교수의 선정 취소 요청, 교육연구단 또는 학과에 심각한 누를 끼친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최종 취소 판정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The selection can be cancelled if one brings serious trouble to the agency or the department, and final cancellation decision is determined by the steering committee.)

(3) 교육연구단 참여대학원생의 주 40시간 이상의 의무조항에 대한 추가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다. (Insert an additional clause if one violates the regulations that works a 40-hour week.)

- 주 평균 40시간, 월 평균 160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한달 160시간 미만은 장학생 선정 정지 사유가 되며 최종 결정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One must work 40-hour week on average, and work 160-hour month on average. If one work less than 160-hour, then the selection can be cancelled, and final cancellation decision is determined by the steering committee.)
- 대학원생은 대학원생 연구실 출입시 근태 시스템을 이용하여 근무 상황을 입력하여야 한다.
- ‘병결’은 질병으로 인하여 출석할 수 없는 상황일 때 쓸 수 있으며, 일일당 8시간으로 해당 월의 근무상황부에 반드시 기록한다. 병결 관련 확인 서류는 BK 행정실에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이 때 진료확인서, 병원비진료비 영수증, 약제비 영수증, 처방전 등의 복사본 서류도 인정한다. (‘Absence Due to Illness’ can be used for absence on account of illness. Record 8 hours for ‘Absence Due to Illness’ on the working document of the corresponding month. It needs to submit the documentary evidence to BK enterprise organization office. When asked for a documentary evidence, medical confirmations, receipts for hospital bills, receipts for medicine costs, prescriptions would be admitted.)
- 공휴일(국경일, 명절, 국가가 정한 공식 휴일, 개교기념일), 학회참석, 출장(개인출장제외), 수학과&BK 교육연구단&IMC 공식행사 참여 모두 주중 주말 상관없이 8시간으로 인정한다. (National holidays, school anniversary, conferences, business trips(exclusive of individual trips), and attending an official event in our department&BK enterprise organization&IMC are admitted 8 hours.)
- 방학 기간 등 30일 미만의 해외 체류 시 교육 및 연구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다는 지도교수 및 교육연구단장의 확인이 있는 경우 연구장학금 전액 지급이 가능하다. 단, 30일을 초과하는 해외 체류 시 연구장학금 지급을 제한한다.

(4) 선정 취소는 취소사유가 발생하는 해당 월에 바로 시행한다. (The selection cancellation is carried out immediately on the corresponding month that reason for revocation occurred.)

6. 장학생 업무 (Scholarship Student Duty)

- (1) 교육연구단 및 학과에서 지정하는 학사업무 보조의 의무가 있다. (There are duties of assisting school affairs that the agency and the department assigned.)
- (2) 학사업무는 강의와 실습의 보조, 기타 학부 및 교육연구단에서 규정하는 제반 업무를 포함한다. (The school affairs contain assisting lectures and practices and other business regulated by other undergraduate studies and the agency.)



부산대학교 수학과 대학원생 학기별 연구활동 보고서

기간	2021년 2학기 (2021.08.01.-2022.01.31.)	
이름		
학번		
과정	과정	학기
지도교수		

연 번	구 분	작 성 자	유의사항	내용
I	BK 참 여 활 동	사 업 단	등급은 총 5개의 등급(A~E) 으로 구분되고, 각 등급은 전체 학생들의 20% 내외	(1) 콜로퀴움 참석(날짜) (2) JMS/JMC 참석(날짜) (3) 학과/BK주관 초청강연 참석(날짜, 연사) (4) BK주관 사업 참여활동 - 다이어리 사업 참가 - 수학노트 사업 참가 (5) 도우미 참여활동 - JMS 도우미(날짜) - 라운지꾸미기 도우미(날짜) - 이사 도우미(날짜) - 기타 도우미(날짜) (6) 연구실 출석현황 ※ 2022년 2월 14일부터 지문인식 방법으로 점검
[연번 I]에 대한 사업단 평가등급:				
II	정 규 수 업	학 생	과목명과 학점 기재 (검정색 굵림 9pt로 작성)	
III	개 인 연 구 활 동	학 생	세부항목에 내용 없을시 파란색 부분만 삭제하고 '없음' 기재 (검정색)	(1) 연구 논문 - published/preprint/in preparation 구분하여 기재 - 출판일, 저널명, 논문제목, 저자명, SCIE급 유무 포함 기재 (2) 학술대회 발표(JMC/JMS 발표 포함) - 날짜, 학술대회명, 발표제목, 발표언어 기재

			굴림 9pt로 작성, 소재목 외 볼릭체 하지 말 것) (3) 학술대회 단순참가 - 조직위원, 도우미 활동 기재 - 날짜, 학술대회명 기재 (4) Lab 세미나 참석 - 날짜 혹은 빈도, 내용, 역할 등 기재 (5) 수상 실적 - 논문상, 발표상, 펠로우쉽 선정 등 기재 - 상명, 날짜, 시상기관 기재 (6) 대학원혁신실 주관 프로그램 참여활동 - 비교과프로그램, 석학초청 연구특강 등 기재 - 날짜, 연사명 기재 (7) 기타 연구활동 - 스터디 그룹, 학부생 세미나 지도 등 기재
IV	총 평 및 계 획	학 생	이번 학기 총평 및 다음 학기 계획 기재 2~3문장으로 간략하게 기술
V	지 도 교 수 확 인	지 도 교 수	본 보고서에 기술된 내용을 확인하고, 이와 관련하여 지도학생과 상담하였습니다. 2022년 2월 일 지도교수명: _____ 서명: _____ [연번 II ~ V]에 대한 지도교수 평가등급:
VI	장 학 생 근 로	학 생	근로 업무 기재 ※ TA 경우, 담당과목 및 업무 기재 [연번 VI]에 대한 관리자(업무에 따라 TA 과목교수 혹은 사업단) 평가등급:

[연번 I ~ VI]에 대한 최종 등급

4단계 BK21 수리과학 인재양성 교육연구단장

(인)

[별표 2]

4단계 BK21사업 계약교수 선발·관리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부산대학교 대학원 수학과 BK21FOUR 교육연구단 계약교수의 신규임용, 재계약임용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자격) 계약교수는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자로 한다.

- ① 박사학위 취득 후 산업체, 교육 또는 연구 경력이 1년 이상인 자
- ② 세부심사표에서 요구한 최소한의 점수 이상인 자
- ③ 교육공무원 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④ 전일제로 근무 가능한 자

제3조 (임용) 계약교수는 교육연구단장이 추천하여 총장이 임명한다.

제4조 (근무기간) 계약교수의 근무기간은 2년 이내를 원칙으로 하며, 최대 2회까지 재계약 임용할 수 있다.

제5조 (신규임용방법) ① 신규임용은 공개채용에 의한 계약으로 임용한다, 다만, 단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채용에 의하여 계약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채용의 분야별 채용인원, 자격요건, 심사기준 및 시기 등은 BK21FOUR 교육연구단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따른다.

③ BK21FOUR 교육연구단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계약교수 중 자교 학사학위 취득자의 비율과 자교 박사학위 취득자의 비율이 각각 3분의 2 이내로 한다. 다만 지원 인원이 3명 미만이거나, 계약교수가 자교 학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그 학사학위 또는 박사학위 전공분야가 교육연구단에서 교육·연구에 전념할 전공분야와 다른 경우에는 자교 학사학위 또는 박사학위 취득자로 계산하지 아니한다.

제6조 (신규임용 전형절차) ① 신규임용은 서류심사, 전공·연구실적심사, 연구계획서 및 면접심사로 한다.

② 제1항의 심사결과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연구단장이 총장에게 임용예정자를 추천한다.

제7조 (서류심사) ① 사업지원실장은 지원자가 제2조의 규정에서 정한 자격요건 및 제출서류 구비여부를 심사하여 적격자에 한하여 전공·연구실적심사 및 면접심사를 요청한다.

③ (제출서류)

가. 내국인 : 공개초빙지원서 (소정양식) 1부

외국인 : Application Form (소정양식) 1부

나. 주요 이력사항(소정양식) 1부

다. 연구실적물 총괄목록(소정양식) 및 연구실적물 각1부

- 접수마감일 현재 발표된 모든 연구실적물
- 게재예정 연구실적물(증빙서류첨부) 및 Preprint

라. 자기소개서(소정양식) 1부

마. 연수계획서(소정양식) 1부

바. 교육연구단 참여 지도교수 추천서(소정양식) 1부

제8조 (심사) ① 계약교수 임용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고 심사완료직후 위원의 자격이 소멸된다.

② 심사위원회 심사는 BK21FOUR 계약교수 임용 세부심사 기준표를 따른다.

③ 심사위원회 구성은 단장 및 교육연구단 소속 교수 중 운영위원회에서 위촉된 4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심사위원장은 단장이 되며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집계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한다.

⑤ 운영위원회는 계약교수임용 공고 전에 BK21FOUR 계약교수 임용 세부심사기준표를 확정한다.

제9조 (운영위원회 심의)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① 심사위원회 심사의 타당성
- ② 교육연구단장의 임용예정자 추천 동의
- ③ 필요시 재심사 요구

제10조 (학내 지위 및 지원) 계약교수의 학내 지위 및 지원은 부산대학교 초빙교수 및 초빙연구원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제11조(임무) 계약교수는 운영위원회가 정한 교육·연구·봉사 영역의 업무를 담당한다.

제12조(보수) 계약교수의 보수는 BK21FOUR 사업비 예산의 국고지원금으로 하고 그 집행은 BK21FOUR 교육연구단의 운영 및 관리 규정에 따른다.

제13조(재계약) ① (시기 및 절차)

가. 교육연구단장은 계약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대상자에게 임용기간 만료일과 재계약임용 여부 및 재계약 임용에 필요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하며, 재계약 임용심사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까지 완료한다.

나. 사업지원실장은 재계약을 희망하는 자로부터 정해진 기간 내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아 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한다.

② (제출서류)

가. 재계약 임용 신청서(소정양식) 1부

나. 연구실적물

- 계약소요기간 내에 발표된 모든 연구실적물 각 1부
- 게재예정 연구실적물(증빙서류첨부) 및 Preprint 각 1부

다. 연구계획서

③ (심사)계약교수의 재계약 임용심사는 신규임용 전형 절차를 따르되 재계약 임용심사는 연구실적심사, 연구계획서 및 필요시 면담심사를 할 수 있다.

제14조 (자격의 정지)

① 타 직장에 취업하였을 경우에는 발생 일을 기준으로 하여 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즉시 자격을 정지한다.

② 자격의 정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잔여 인건비는 BK21FOUR 사업비 집행 및 관리 지침에 따른다.

③ 임용 후에도 지원자격이나 연구실적 등을 허위로 제출하여 임용요건에 하자가 있을 때에는 임용을 취소한다.

④ 임용된 계약교수의 자격정지로 인한 결원은 공개채용하고 그 절차 및 방법은 위에서 정한 바를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2021. 0. 0.)

제2조(개정) 이 규정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정할 수 있다.

제3조(계약교수 활용)

수학과 BK21FOUR 계약교수 세부심사표

가. 기본 및 연구영역A

심사영역	심사항목	세부심사항목	배점 기준	배점	점수
기본영역	추천서 평가	지도교수 추천 여부 (추천이 없을 경우 제외)	1. 임용심사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적격여부를 가·부로 판정	가·부	
연구영역 A	연구 실적평가 (최근3년)	양적&질적 평가 (공고 월 기준 최근 3년 이내 발표된 SCIE, SSCI 연구실적 물에 대해 연평균으 로 계산)	1. 평가점수 200%이상 35점, 190%이상 34점, 180%이상 32점 170%이상 30점, 160%이상 28점, 150%이상 26점 140%이상 24점, 130%이상 22점, 120%이상 20점 110%이상 18점, 100%이상 16점, 90%이상 14점 80%이상 12점, 70%이상 10점 ※ 연평균 70%미만은 지원 자격 없음 2. 인정대상 연구실적물 : SCIE, SSCI (당해 BK보고서 JCR 제시 기준) 3. 인정환산율 : 단독 100%, 2인 70%, 3인 50%, 4인 이상 30%. 단, 제1저자 및 교신저자에 대한 추가 가중점수 없음 4. 가중치 적용 ① JCR기준 category 상위 20%내의 게재논문 1.25 ② ①항 이외의 게재논문 1.0	35	
	연수 계획서	계획서의 적합성, 충실도	상(8~10점), 중(6~7점), 하(5점)	10	
소 계				45	

나. 연구영역B

심사영역	심사항목	세 부 심 사 항 목	배점 기준	배점
연구 영역 B	연구 실적평가 (출판예 정, 투고, preprint)	양적&질적 평가 (공고 월 기준 출판 예정 SCIE, SSCI 연구실적물에 대해 총점수로 계산)	1. 평가점수 200%이상 (20점) 150%이상 - 200%미만(18점) 100%이상 - 150%미만(16점) 70%이상 - 100%미만(14점) 50%이상 - 70%미만(12점) 30%이상 - 50%미만(10점) ※ 전체 30%미만은 0점 처리 2. 인정대상 연구실적물 : SCIE, SSCI (당해 BK보고서 JCR 제시 기준) 3. 인정환산율 : 단독 100%, 2인 70%, 3인 50%, 4인 이상 30%. 단, 제1저자 및 교신저자에 대한 추가 가중점수 없음 4.가중치 적용 ① JCR기준 category 상위 20%내의 게재논문 1.25 ② ①항 이외의 게재논문 1.0	20
		양적평가(공고 월 기준 투고중 SCIE, SSCI 연구실적물에 대해 편수로 계산)	1. 평가점수: 3편이상(10), 2편(8), 1편(5) ※ 투고 편수 없음 0점 처리 2. 인정대상 연구실적물 : SCIE, SSCI(당해 BK보고서 JCR 제시 기준)	10
		양적평가(공고 월기준 preprint 연구실적 물에 대해 편수로 계산)	1. 평가점수 3편이상(5), 2편(3), 1편(1) ※ 편수 없음 0점 처리	5
	소 계			35
기본 연구영역A과 연구영역B의 합계				80

※ 채용심사 평가점수가 기본 및 연구영역A 15점 미만 & 연구영역B 5점 미만인 경우 채용 부적합으로 판정

최종작성 확인자 : 수학과 BK21FOUR 교육연구단장 이 동 희 (인)

[별표 3]

4단계 BK21사업 박사후 연수연구원의 선발·관리에 관한 규정

제정 2021. 04. 12., 4단계 BK21 규칙 제00호

개정 2022. 02. 10., 4단계 BK21 규칙 제00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부산대학교 대학원 수학과 BK21FOUR 교육연구단 박사후 연수연구원의 선발·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자격) 박사후 연수연구원은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자로 한다.

- ① 박사학위 소지자 및 학위취득예정자(졸업예정증명서첨부)
- ② 교육연구단 참여교수 1인의 추천을 받은 자
- ③ 세부심사표에서 요구한 최소한의 점수 이상인 자
- ④ 교육공무원 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⑤ 전일제로 근무 가능한 자

제3조 (임용) 박사후 연수연구원은 교육연구단장이 추천하여 총장이 임명한다.

제4조 (근무기간) 박사후 연수연구원의 근무기간은 1년 이내를 원칙으로 하며, 최대 2회까지 재계약 임용할 수 있다. 다만, 대응자금으로 임용하는 박사후 연수 연구원의 근무기간은 교육연구단장이 결정한다.

제5조 (신규임용방법) ① 신규임용은 공개채용 또는 BK21FOUR 교육연구단 참여교수의 추천에 의한 계약으로 임용한다, 다만, 단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채용에 의하여 계약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채용의 분야별 채용인원, 자격요건, 심사기준 및 시기 등은 BK21FOUR 교육연구단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따른다.

③ BK21FOUR 교육연구단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박사후과정생 중 자교 박사학위 취득자는 3분의 2 이내로 한다. 다만 지원 인원이 3명 미만이거나, 박사후과정생이 자교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그 박사학위 전공분야가 교육연구단에서 연구에 전념할 전공분야와 다른 경우에는 자교 박사학위 취득자로 계산하지 아니한다.

제6조 (신규임용 전형절차) ① 신규임용은 서류심사, 전공·연구실적심사, 연구계획서 및 면접심사로 한다.

② 제1항의 심사결과를 BK21FOUR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연구단장이 총장에게 임용예정자를 추천한다.

제7조 (서류심사) ① 사업지원실장은 지원자가 제2조의 규정에서 정한 자격요건 및 제출서류 구비여부를 심사하여 적격자에 한하여 전공·연구실적심사 및 면접심사를 요청한다.

② (제출서류)

가. 내국인 : 공개초빙지원서 (소정양식) 1부

외국인 : Application Form (소정양식) 1부

나. 주요 이력사항(소정양식) 1부

다. 연구실적물 총괄목록(소정양식) 및 연구실적물 각1부

- 접수마감일 현재 발표된 모든 연구실적물
- 게재예정 연구실적물(증빙서류첨부) 및 Preprint

라. 자기소개서(소정양식) 1부

마. 연수계획서(소정양식) 1부

바. 교육연구단 참여 지도교수 추천서(소정양식) 1부

제8조(심사) ① 연수연구원 임용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고 심사완료직후 위원의 자격이 소멸된다.

② 심사위원회 심사는 연수연구원 임용 세부심사기준표를 따른다.

③ 계약교수 심사위원회가 연수연구원 임용 심사위원회를 겸임한다.

④ 심사위원장은 교육연구단장이 되며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집계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한다.

⑤ 운영위원회는 연수연구원 임용 공고 전에 연수연구원 임용 세부심사기준표를 확정한다.

제9조 (운영위원회 심의)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① 심사위원회 심사의 타당성

② 교육연구단장의 임용예정자 추천 동의

③ 필요시 재심사 요구

제10조 (학내 지위 및 지원) 연수연구원의 학내지위 및 지원은 부산대학교 연구원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제11조(임무) 연수연구원은 운영위원회가 정한 교육·연구·봉사 영역의 업무를 담당한다.

제12조(보수) 연수연구원의 보수는 BK21FOUR 사업비 집행 및 관리 지침에 따른다.

제13조(재계약) ①(시기 및 절차)

가. 교육연구단장은 계약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대상자에게 임용기간 만료일과 재계약임용 여부 및 재계약 임용에 필요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하며, 재계약 임용심사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까지 완료한다.

나. 사업지원실장은 재계약을 희망하는 자로부터 정해진 기간 내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아 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한다.

②(제출서류)

가. 재계약 임용 신청서(소정양식) 1부

나. 연구실적물

- 계약소요기간 내에 발표된 모든 연구실적물 각 1부

- 게재예정 연구실적물(증빙서류첨부) 및 Preprint 각 1부

다. 활용계획서(지도교수 작성) 1부

라. 연수계획서

③(심사) 연수연구원의 재계약 임용심사는 신규임용 전형 절차를 따르되 재계약 임용심사는 연구실적 심사, 연수계획서 및 필요시 면담심사를 할 수 있다.

제14조 (자격의 정지)

① 타 직장에 취업하였을 경우에는 발생 일을 기준으로 하여 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즉시 자격을 정지한다.

②자격의 정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잔여 인건비는 BK21FOUR 사업비 집행 및 관리 지침에 따른다.

③임용 후에도 지원자격이나 연구실적 등을 허위로 제출하여 임용요건에 하자가 있을 때에는 임용을 취소한다.

④임용된 연수연구원의 자격정지로 인한 결원은 공개채용하고 그 절차 및 방법은 위에서 정한 바를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2021. 0. 0.)

제2조(개정) 이 규정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정할 수 있다.

제3조(연수연구원 활용)

수학과 BK21FOUR 박사후연수연구원 세부심사표

가. 기본 및 연구영역A

심사영역	심사항목	세부심사항목	배점 기준	배점	점수
기본영역	추천서 평가	지도교수추천여부 (추천이 없을 경우 제외)	1. 임용심사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적격여부를 가·부로 판정	가·부	
연구영역 A	연구실적 평가 (최근3년)	양적 & 질적 평가 (공고 월 기준 최근 3년 이내 발표된 SCIE, SSCI 연구실적물에 대해 연평균으로 계산)	1. 평가점수 : 200%이상 35점, 190%이상 34점, 180%이상 32점, 170%이상 30점, 160%이상 28점, 150%이상 26점, 140%이상 24점, 130%이상 22점, 120%이상 20점, 110%이상 18점, 100%이상 16점, 90%이상 14점, 80%이상 12점, 70%이상 10점, 60%이상 8점, 50%이상 6점 ※ 연평균 50%미만은 지원 자격 없음 2. 평가방법 · 박사학위취득 3년 경과된 경우: 전체논문 평가점수 합산/3년 · 박사학위취득 3년 경과되지 않은 경우 : 전체논문 평가점수 합산에 대한 해당기간 내 연평균 * 전체논문: 공고 월 기준 최근 3년 이내 발표된 SCIE, SSCI 연구실적물 3. JCR 기준 : 공고 해 전년도 JCR 적용 4. 인정환산율 : 단독 100%, 2인 70%, 3인 50%, 4인 이상 30%. 단, 제1저자 및 교신저자에 대한 추가 가중점수 없음 5. 가중치:① JCR기준 category 상위 20%내의 게재논문 1.25 ② ①항 이외의 게재논문 1.0	35	
소 계				35	

나. 연구영역B

심사영역	심사항목	세부 심사항목	배점 기준	배점
연구영역 B	연구실적 평가(출판 예정투고, preprint)	양적&질적 평가 (공고 월 기준 출판 예정 SCIE, SSCI 연구실적물에 대해 총 점수로 계산)	1. 평가점수 : 200%이상(20점), 150%이상 - 200%미만(18점) 100%이상 - 150%미만(16점), 70%이상 - 100%미만(14점) 50%이상 - 70%미만(12점), 30%이상 - 50%미만(10점) ※ 전체 30%미만은 0점 처리(평가방법: 각 논문 평가점수 합산) 2. 인정대상 연구실적물 : SCIE, SSCI (공고 해 전년도 JCR 적용) 3. 인정환산율 : 단독 100%, 2인 70%, 3인 50%, 4인 이상 30%. 단, 제1저자 및 교신저자에 대한 추가 가중점수 없음 4. 가중치 적용: ① JCR기준 category 상위 20%내의 게재논문 1.25 ② ①항 이외의 게재논문 1.0	20
		양적 평가(공고 월 기준 투고중 SCIE, SSCI 연구실적물에 대해 편수로 계산)	1. 평가점수 : 3편이상(10), 2편(8), 1편(5) ※ 투고 편수 없음 0점 처리 2. 인정대상 연구실적물 : SCIE, SSCI (공고 해 전년도 JCR 적용)	10
		양적 평가(공고 월 기준 preprint 연구실적물에 대해 편수로 계산)	1. 평가점수 3편이상(5), 2편(3), 1편(1) ※편수 없음 0점 처리	5
	연수 계획서	계획서의 적합성, 충실도	상(20~16점), 중(15~11점), 하(10~5점)	20
	소 계			55
	기본 연구영역A와 연구영역B의 합계			90

※ 채용심사 평가점수가 기본 및 연구영역A 5점 미만 & 연구영역B 20점 미만인 경우 채용 부적합으로 판정

최종작성 확인자 : 수학과 BK21FOUR 교육연구단장 (인)

[별표4]

4단계 BK21사업 사무원의 선발·관리에 관한 규정

제1조(임용) 교육연구단직원의 임용은 교육연구단장의 추천으로 산학협력단장이 임용한다.

제2조(신규채용) ① 교육연구단직원을 신규채용시 업무 수행능력을 고려하여 적격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② 교육연구단직원의 임용 방법과 결격 사유와 구비서류에 관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및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 계약직원 인사관리 지침 규정을 준용한다.

③ 교육연구단직원의 임용기간은 1년으로 하되 재임용할 수 있다. 단, 임용기간은 사업기간 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정원) 교육연구단직원의 정원은 운영위원회의에서 정한다.

제4조(복무) 교육연구단직원은 학칙 국가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고 교육연구단장의 명을 받아 성실하게 담당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5조(보수) 교육연구단직원의 보수는 보수규정에서 정한다.

제6조(징계 및 면직) ① 징계는 국가공무원법 및 부산대학교 기성회직원 규정을 준용한다.

② 교육부 지역대학원 육성사업이 중단 또는 종료되는 때에는 당연 면직된다.

제7조(퇴직금 지급) 교육연구단직원의 퇴직금 지급은 부산대학교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성과급 지급) 교육연구단직원의 성과급은 연 2회 (첨부1)근무실적평가서에 따라 운영위원회를 거쳐 지급할 수 있다. 평가대상기간은 각각 3월~8월, 9월~2월로 한다.

(첨부 1)

근무실적 평가서

□ 평가대상기간 : 2020.09.01.~2021.02.28. (6개월)

1. 대상자

성명	소속	최초 임용일	근속연월* (전체)
			년 월

* 실제 근무기간

2. 담당업무

업무영역	담당업무명	업무비중 (%)	직무수행내용 (주요실적)	업무단위 (규모)
교육	◦ 사업설명회	5	◦ 사업설명회 - 0000.00.00	◦ 설명회: 00회 - 참여대학원생(00명)
지원	◦ 세미나 개최 ◦ 지출결의서 작성 ◦ 자격검증 ◦ 참여교수 변경 ◦ 신진연구인력 채용업무 ◦ 신진연구인력 타과제 신청	75	◦ 세미나 개최 - 0000.00.00 ◦ 카드지출: 00회 / 000원 ◦ 일반지출: ◦ 참여인력 검증: 00회 - 0000.00.00	◦ 세미나 개최: 00회 ◦ 참여인력 검증 - 참여대학원생(00명)
기타	◦ 실적평가서 기초자료 정리	20	◦ 실적평가 대상인원 : 00명	◦ 실적평가 자료 정리 - 대상인원(00명)

3. 근무실적 평가표

평가영역	구분	평가항목	배점	평가점수				
				매우미흡	미흡	보통	우수	매우우수
1.근무실적 (50점)		담당업무에 대한 창의적 기여도	10					
		담당업무의 중요도 및 난이도	10					
		업무수행의 적시성	30					
2.직무수행능력 (50점)		담당업무의 숙지도 및 전문성	30					
		업무의 기획력 및 추진력	20					
최종점수			계	100 점				

년 월 일

수리과학 인재양성 교육연구단장

(인)

[별표 5]

4단계 BK21사업 인센티브 운영 및 지급 규정

제정 2021. 04. 12., 4단계 BK21 규칙 제00호

개정 2022. 02. 10., 4단계 BK21 규칙 제00호

1. 대상

- ① 참여대학원생
- ② 신진연구인력 (계약교수 및 박사후연구원)
- ③ 참여교수

2. 재원: 국고지원금

3. 시기: 연중 적절한 시점

4. 방법

- ① 대학원생 : 장학금 차등지원, 학회 참가 경비지원
- ② 신진연구인력 : 일정 금액의 연구 장려금
- ③ 참여교수 : 일정 금액의 장려금 또는 연구재료 및 장비

5. 지급원칙

① 대학원생

가. 장학금 차등지원, 국내 외 학회 발표자 및 공동발표자 등은 대학원생 실적평가 점수 등을 고려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선발

나. 대학원생 실적우수자 : 일정 금액의 연구 장려금 지원

- 대학원생 실적우수자 인센티브 지급 시기는 매 학기 말 지급할 수 있다.
- 대학원생 실적평가는 [별표1] 대학원생 지원과 장학생 선발 및 업무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 실적평가에 따른 실적우수자 선정 및 인센티브 금액 선정은 매 학기 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② 신진연구인력 우수논문포상 : SCIE급 출판 논문에 대한 일정 금액의 연구 장려금

- 우수논문포상 시기는 매 연차 말에 지급할 수 있다.
- SCIE급 저널 출판 논문 한 편당 20점씩 산정한다. 합계 점수는 100점을 초과할 수 없다(최대 5편까지 인정).
- 신진연구인력의 편당 논문 점수는 '20/공동연구자수'로 산정한다. 단, 공동연구자에 BK21FOUR 교육연구단 참여교수는 제외한다.
- 합계 점수에 따른 금액 선정은 매 연차 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

③ 참여교수: 교육연구단 참여교수를 대상으로 (첨부1)의 교육연구단 참여교수 평가표에 의한 평가점수를 바탕으로 5 - 7 단계로 차등 지급

- 평가 점수별 단계설정과 단계별 비율 및 지급액은 매 연차 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

④ 장려금은 매 회계 연도의 인센티브 예산에 따라 등급별 지급 금액을 산정하며, 참여교수 1인당 300만원(국고지원금)을 초과할 수 없다.

⑤ 1회성 포상금

가. 사업단 자체 운영 세미나(Junior Math Seminar)·콜로퀴움(Junior Math Colloquium) 우수 발표자 포상

- 사업단 자체 운영 세미나·콜로퀴움의 우수 발표자(대학원생)에 대한 1회성 포상금 지급 시기는 매 학기 세미나·콜로퀴움 종료 후 지급할 수 있다.
- 평가항목은 발표 준비성(20), 내용의 구성(20), 주제의 이해도(20), 진행의 적절성(20), 청중과의 교류(20)이며, 항목에 대한 종합(100)적 평가는 세미나·콜로퀴움 좌장이 담당한다.
- 사업단 자체 운영 세미나·콜로퀴움 우수 발표자 1회성 포상금 예산은 학기당 100만원 범위 내(1인당 50만원 이내)에서 집행할 수 있으며, 수상 인원 및 금액 선정은 매 학기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나. 우수 논문 포상

- 우수 논문 게재자(대학원생)에 대한 1회성 포상금 지급 시기는 매 연차 말 지급할 수 있다.
- 평가방법은 분야별 교수들이 논문의 우수성(50), 학생의 기여도(50)를 종합(100)적으로 평가하여 해당분야에서 가장 우수한 학생을 추천한다. (단, 응용수학 분야는 2명 추천 가능)
- 우수 논문 포상금 예산은 연차당 400만원 범위 내(1인당 50만원 이내)에서 집행할 수 있으며, 수상인원 및 금액 선정은 매 연차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다. 우수 TA 포상

- 우수 TA 대학원생에 대한 1회성 포상금 지급 시기는 매 연차 말 지급할 수 있다.
- 평가항목은 담당 업무에 대한 준비성(20), 담당업무의 중요도 및 난이도(20), 담당업무의 수행력 및 추진력(20), 담당업무에 대한 창의적 기여도(20), 업무수행의 적시성 및 근태(20)이며, 항목에 대한 종합(100)적 평가는 TA 담당 과목 교수가 담당하여 추천한다.
- 우수 TA 포상금 예산은 연차당 200만원 범위 내(1인당 50만원 이내)에서 집행할 수 있으며, 수상인원 및 금액 선정은 매 연차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첨부1)

4단계 BK21 사업 참여교수 자체평가표

평가기간: 0000.00.00-0000.00.000

참여교수 성명 :

서명(날인):

연구 및 교육

영역	평가항목		평가기준	평가점수	소계	참고 번호
	중항목	세부항목평가				
연구	SCIE급 논문출판	•논문	10점×편수			1
		•IF(or ES) 상위 10% 논문	5점×편수			2
	연구비 수주	•수주액합계: 5천만 이상	10점			3
		•수주액합계: 5천만 미만 (없는 경우 0점 처리)	5점		(가)	4
교육	취업	•대학원생 취업실적 (박사진학과 유학의 경우는 산출 근거에서 제외, 취업 대상 학생이 없는 경우는 0점)	10점×취업학생수		(나)	5
총점= (가) + (나) =						6

봉사

영역	평가항목		평가기준	평가점수	소계	참고 번호
	중항목	세부항목평가				
봉사	학생 운영	•학생 연구역량 및 취업률 향상 방안 강구 및 지원 전략 책임	20점×학기			7
	연구 운영	•교수 및 신진연구인력 연구역량 향 상 방안 강구 및 지원 전략 책임	20점×학기			8
	국제화 운영	•교육연구단 국제화 전략 및 추진 책 임	20점×학기			9
	보고서 운영	•신청서, 연차보고서 및 기타보고서 참여	40점			10
	교육연구단 운영	•교육연구단의 전반적 운영	20점		(다)	11

총점= (가) + (나) + (다) =						12
-----------------------	--	--	--	--	--	----

[실적근거]

1-2. (첨부1-1)논문리스트 (IF포함)

3-4. 연구비수주목록

5, 7-11. 교육연구단장 확인서

(첨부1-1)

논문리스트

[illegible]

[별표6]

국제협력경비 지원 계획 및 세부시행 지침

1. 지원목적

교육연구단 참여교수, 신진연구인력 및 대학원 학생들의 국제학술회의 및 국외집중 세미나 참가 기회 및 국제간 학문교류 확대로 교육연구단 연구인력의 연구능력 향상 및 연구 의욕 활성화로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함

2. 지원내용

가. 지원분야 :

- 교육연구단 관련분야 국내외 개최 국제학술회의 및 참가
- 교육연구단 관련분야 국내외 대학 및 연구소에서 장단기 연수
- 교육연구단 관련 해외석학초빙

나. 지원내역(국내외 출장경비 지급 규정 적용 원칙)

- 항공료, 숙박비 등 산학협력단의 BK21FOUR 지침에 따름

(참고)국내외 출장 경비 지급 규정

항공료: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지급

체재비(숙박비 및 식비 등):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지급

3. 지원대상

가. 국제학술대회 당 발표 논문별 저자 중 3인 이내의 참여대학원생, 신진연구인력, 및 해당 참여대학원생의 지도교수에 대하여 지원 가능

나. 지원 대상은 국제학술회의와 장단기 연수를 구분하여 선정한다.

1) 국제학술회의의 경우 국제학술회의 인정기준을 만족하는 때에 지원 대상으로 선정

2) 장단기 연수의 경우 [별표1] 대학원생 지원과 장학생 선발 및 업무에 관한 규정에 따른 실적평가서를 토대로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지원자 선정

※[국제학술대회 인정기준]

○ 4개국 이상 참여

○ 총 구두발표논문 20건 이상(인문사회분야의 경우 발표논문 수가 10건 이상)

○ 총 구두발표논문 중 외국인 논문비율 50% 이상

(다만, 국내 개최 시에는 3분의 1 이상)

4. 신청제한(제외)

가. 타 기관(부산대학교 본부지원 포함) 및 개인연구비(학진 또는 과학재단 등)에서 지원을 받은 경우

나. 초청자 측에서 부담하는 여비 및 체재비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예) 초청자 측에서 숙박비(항공료)를 부담하는 경우, 항공료 및 체재비(숙박비 및 체재비)만 지원 가능

다. 휴직자, 국내·외 파견중인 자는 해당 기간 동안 지원 대상에서 제외

라. 국제학술회의 참가 이후 경비지원 신청하였을 경우

마. 대학원생을 동반하지 않은 참여교수의 단독 해외 연수 경비는 집행할 수 없음.

5. 신청 및 경비 지급 절차

1) 국제학술회의 참가

가. 신청기한: 국제학술회의 참가일로부터 2주(14일)전에 교육연구단 행정실을 경유하여 신청

나. 신청서류

- 국제학술회의 참가 경비 지원 신청서 1부(서식1)
- 학술회의 주관기관 발행 행사일정표 1부
 - ※ 행사일정표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 결과보고 시에 제출
- 논문발표 수락서 또는 초청장 1부(e-mail 사본 가능)
(발표자 및 발표제목이 명시된 행사 일정표로 대체 가능)

다. 결과보고서 제출

- 제출기한: 귀국(국내개최의 경우 회의 종료)후 7일 이내에 교육연구단 행정실에 제출
- 제출서류
 - 국제학술회의 참가 결과보고서 1부(서식2, 서식2-1, 서식2-2)
 - 항공권 원본 및 여권 사본(출입국 일부인이 날인된 부분) 각 1부
 - 프로시딩 발표 논문 및 프로시딩 표지 사본 각 1부 (프로시딩이 없는 경우 논문발표 자료)
 - 주관기관 발행 행사 일정표(신청시 미제출한 경우) 1부
 - 학술회의 등록비 영수증(등록비를 지원 받을 경우)
 - 기타 산학협력단에서 요구하는 서류

2) 장단기 연수

가. 국제학술회의 참가 외에 해외 대학 및 연구소에서 15일 이내 연수를 단기연수, 15일 초과 연수를 장기 연수

나. 신청기한: 장단기 연수 시작일로부터 2주(14일)전에 교육연구단 행정실을 경유하여 신청

다. 신청서류

- 지도교수 추천서
- 해당대학 초청공문 또는 초청 메일
- 연수계획서 (연수의 목적과 방법에 대한 전반적 계획을 포함)

라. 결과보고서 제출

- 제출기한: 귀국 후 15일 이내에 교육연구단 행정실에 제출
- 제출서류
 - 해외연수 활동 보고서
 - 항공권 원본 및 여권 사본(출입국 일부인이 날인된 부분) 각 1부
 - 기타 산학협력단에서 요구하는 서류

마. 장기연수의 경우 교육연구단 예산을 고려하여 교육연구단 운영위에서 국내외 출장경비 지급 규정 이내로 경비를 산출

3) 국외 초청학자

- 해외석학초청 강사료 : [서식3호]세미나개최계획서 및 [서식3-1호]정산보고서 첨부, 사진, 방명록, 여권 사본(사진첨부된 곳), 입출국 도장
- 해외석학초청 자문료 : [서식4호]전문가활용내역서, 여권사본(사진첨부된 곳), 입출국 도장

※ 해외송금 및 외화수표는 영수증 복사본 및 내역서 첨부(은행발행)

- 해외석학 항공료 지급 : [서식3호]세미나 개최계획서 및 [서식3-1호]정산보고서 첨부, 항공료 영수증, 인보이스, 여권사본(사진 첨부된 곳), 입출국 도장, 사진, 방명록, 편도티켓, 환율적용시 카드전표날짜(인보이스날짜) 적용
- 해외석학 여비(식비 및 숙박비) : 숙박비일 경우 카드전표 및 숙박업체 내역서, [서식3호]세미나 개최계획서 및 [서식3-1호]정산보고서 첨부, 식비일 경우 카드전표 및 [서식3호]세미나 개최계획서 및 [서식3-1 호]정산보고서 첨부, 사진, 방명록

4) 국제학술회의 개최

- [서식5호] 학술회의개최 지원신청서 및 [서식5-1호] 학술행사 결과보고서 첨부, 영수증, 책자, 발표자료, 사진, 방명록, 여권사본(사진첨부된 곳), 입출국 도장

※ 해외송금 및 외화수표는 영수증 복사본 및 내역서 첨부(은행발행)

7. 유의사항

- 타기관 및 연구비에서 지원 받을 경우 경비지원 불가
- 경비지급 후라도 지원제한(제외)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견되면 지원 경비 회수
-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지원경비 회수

국제학술회의 참가 신청서

학 술 회 의	회의명	국문: 영문:					
	주관기관명:						
	참가기간:			참가지역	국 명:		
	논문발표일자:				도시명:		
	참가역할:						
참가신청자		· 소속: · 성명: · 연락처:		· 학번: · 소속: · 성명: · 연락처:			
발표내용							
논문발표의 경우	연구비 지원기관		연구기간		연구비	원	
위와 같이 연구논문 발표 및 발표회 참여를 위하여 국제학술회의에 참가코자 하오니 참가여비를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청인: (인) 지도교수: (인)							
위의 학술회의는 해당 학문분야에서 권위있는 국제학술회의로서 신청인은 전공분야에서 재능이 탁월하고 동 회의에 참석함으로써 국내학문수준의 고양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므로 추천합니다. 20 . . . 단장: (인)							

국제학술회의 참가 계획서

참석 목적 및 필요성	
학술회의 주관기관의 규모 및 성격	
학술회의 주제 내용	
학술회의 관련된 국내외 연구동향	
수행하고자 하는 사항	
참가세부일정	
참가결과의 활용계획	
기타	

국제학술회의 참가 경비 내역서

• 참가 경비 산출 내역 (단위: 원)

직급	성명	항공료	체재비(체재: 일, 숙박: 일)			계	비고
			일비	숙박비	식비		

- 총경비:
- 신청경비:
- 입금계좌:
- 학회비

직급	성명	학회비	
		단위: \$	단위: 원

국제학술회의 참가 결과보고서

학술회의명			
회 의 개 최	주관기관명:		
	개최기간:	참가 지역	국명: 도시:
	학문분야:		
참 가 기 간			
참 가 자	·학 번:		·학 번:
	·소 속:		·소 속:
	·성 명:		·성 명:
	·연락처:		·연락처:
위와 같이 본교의 지원을 받아 국제학술회의에 참석하고 그 활동결과를 별첨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임: 20 . . . 참가자 성명 (인) 참가자 성명 (인) 부산대학교 총장 귀하			

[서식 2-1호]

국제학술회의 참가 활동 보고서

1. 학술회의명:
2. 기 간:
3. 개 최 장 소:
4. 참가 수행한 사항(일정별로 명기)
5. 학술적 의의
6. 회의내용에 관련되는 건의사항
7. 기타 참고사항

국제학술회의 참석경비 정산

- 총지원 경비:
- 총사용 경비:

경비항목	사용경비 (단위:USD)	사용경비 (단위:)	사용경비 (단위:)	사용경비 (단위:)	사용경비 (단위:₩)	합계 (단위:₩)	비 고
항공비							
학회등록비							
숙박비							
일비							
식비							
준비비							
합 계							

국제학술회의 인정기준 및 참여요건 충족 확인서

- ☐ 학회명:
- ☐ 학회개최기간:
- ☐ 개최국:
- ☐ 주관학회:
- ☐ 국제학술회의 인정기준에 대한 세부사항

구분	기준	확인사항
총 참가국가수	4개국 이상	OO 개국
총 구두발표논문건수	20건 이상 (인문사회 10건 이상)	OO 건
총 구두발표논문 중 외국인(외국기관 소속) 논문 수/비율	50%이상 (국내개최시 1/3 이상)	OO %
학회 web address		

본 교육연구단 소속 대학원생이 참가하는 상기 국제학술회의는 BK21FOUR 사업 관리운 영지침 제32조 국제학술회의 인정기준과 참여자 요건을 모두 충족함을 확인합니다.

부산대학교 BK21FOUR
수리과학 인재양성 교육연구단장 (인)

세 미 나 개 최 계 획 서

우리 ○○○○ 교육연구단(과제)에서 아래와 같이 세미나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 1. 일 시:
- 2. 장 소:
- 3. 연 제:
- 4. 목 적:
- 5. 연사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국 적		직장/직위	

- 6. 참석 대상 및 예상 인원:
- 7. 소요경비 내역

항 목	소요액(원)	산 출 내 역	비 고
강사료			계좌번호:
여 비			계좌번호:
다과비			카드사용
숙박비			카드사용
간담회비			카드사용
계			

세 미 나 정 산 보 고 서

- 1. 일 시:
- 2. 장 소:
- 3. 연 제:
- 4. 연사성명:
- 5. 참 석 자 :
- 6. 강연내용:
- 7. 성 과:
- 8. 정산 내역

사용 항목	집 행 액(원)	비 고
가. 강사료		
나. 여 비		
다. 다과비		
라. 숙박비		
마. 간담회비		
계		

붙임: 초청특강 영수증 1부

위와 같이 세미나 정산보고서를 제출합니다.

. . .

○○○ 교육연구단(팀)장 ○ ○ ○ (인)

특강료 영수증

1. 연 제 명		
2. 수 령 액		₩
가. 강 사 료		₩
나. 여 비		₩
다. 기 타		₩
상기 금액을 정히 영수함 영 수 인 성명: (서명)		
3. 연 사 인 적 사 항	가. 성 명	
	나. 직 장 명	
	다. 직 위(책)	

[서식 4호]

전문가활용내역서

연구책임자	소속		성명	(인)
연구과제명				
연구비과목			집행액	

전문가활용내역					
소속		직급		성명	
주소				연락처	
지급액		금융기관		계좌번호	
일자	. .	시간	: ~ :	장소	
내용	※ 내용에는 활용 분야 및 내용을 상세히 기술.				

붙임 : 신분증(여권) 사본 1부

학술대회개최 지원신청서

회의명	
주관기관명	
개최기간	
개최장소	
초청자명단	
비 목	
BK예상경비	

위와 같이 학술대회개최 경비를 지원받고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첨부 1. 학술대회 개최계획서 1부
2. 학술대회 홈페이지 사본 1부
3. 학술대회 프로그램 (프로그램, 초록집 등) 1부

20 년 월 0일

신 청 인 _____(인)

위의 학술회의 개최에 따른 지원신청을 승인합니다.

20 년 월 0일

수리과학 인재양성 교육연구단장 _____(인)

학술대회 개최계획서

1. 개최목적 및 필요성

2. 대회주제명 및 일정별 세부계획

가. 대회 주제명

나. 일정별 세부계획

3. 학술대회와 관련된 국내, 외 연구동향

4. 학술대회개최에 따른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5. 학술대회 규모

가. 위원회인원

참 가 자 수		계
조직위원회	자문위원회	

나. 참가예정 인원

분 야 별	참 가 자 수		계
	국 내	국 외	
대학교수, 선임연구원급			
대학원생, 연구원급			
계			

※ 인원수 : 실제 참가가능인원수만 기재(발표, 토론, 사회 및 일반참가자 포함)

다. 발표 예정 연제 현황

분 야 별	발 표 연 제 수		계
	국내인 발표	외국인 발표	
초청강연			
주제발표			
Poster 등			
계			

※ 연제수 : 각 연제의 대표 발표자의 소속에 따라 국내인, 외국인 발표 구분

6. 대회개최 유관기관 (대회개최에 관련된 기관들 모두)

기관명칭	유 관 내 용	지원형태

7. 소요경비 및 재원 조달

가. 수입(예상)내역(예시)

기 관 명	지 원 액 (단위:원)
계	

8. 초청강연자 인적사항 및 소요경비 내역

가. 초청강연자 인적사항 및 강연자별 지원 예산

인 적 사 항			
1.성 명		주민등록번호(여권번호)	
국 적		직장/직위	
전화번호		이메일	
주 소			
발표제목			

나. 소요경비 세부내역

1) BK21 수리과학 인재양성 교육연구단 소요경비

금 액		산출내역	비 고
강사료			전신송금 or 송금외화수표
여 비			전신송금 or 송금외화수표
숙박비			법인카드 결제
송금수수료			
계			

학술행사 결과보고서

행 사 명						
주 관 기 관				대표자		연락처
개 최 기 간						
개 최 장 소						
참 가 실 적 인 원	참가 역할	내국인	외국인	참가자 직위	내국인	외국인
	oral 발표자			본교 교수		
	poster 발표자			본교 연구원, 대학(원)생		
	토 론 자			본교 외 교수급		
	사회(좌장)			본교 외 연구원 및 학생		
	일반참가자			기타		
	계			계		
발 표 실 적 논 문 수	oral			참여 기관 수	교외 (기관단위)	개
	poster				교내 (학과 단위)	개
학 술 행 사 개 최 효 과						
학술대회 경비 사용내역	집행내역				비 고	
	경비사용내역	집행액				
	가. 강 사 료					
	나. 여 비					
	다. 숙 박 료					
	라. 송금수표발행수수료					
	총 계					
위와 같이 학술행사 결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불 입 1. 영수증 각 1부 2. 학회책자 1부 3. 발표자료 1부. 4. 특강료 영수증 각 1부. 5. 방명록 및 사진. 끝.						
20 년 월 일						
수리과학 인재양성 교육연구단장 : (인)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 귀하						